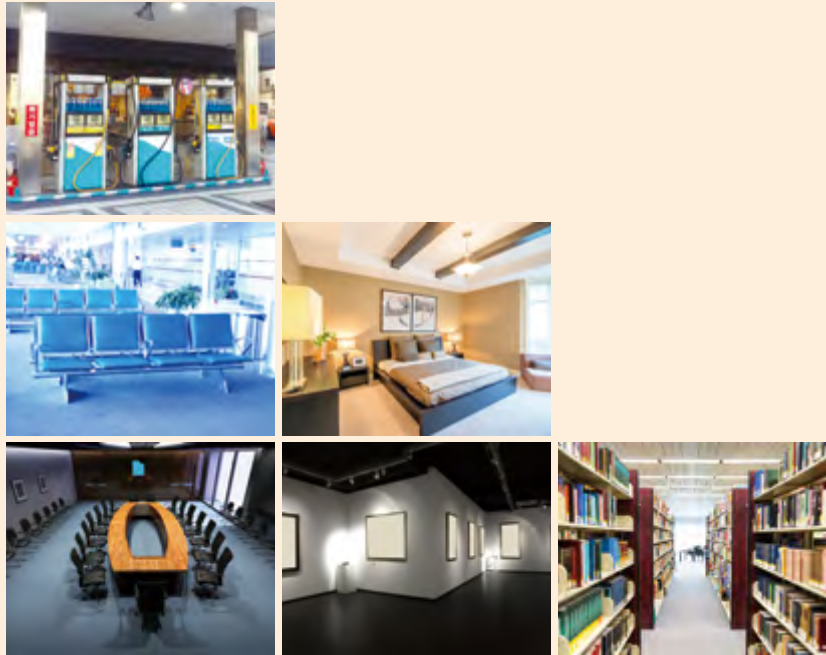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2017년 1월 8일 이후 판매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화재사고 등

큰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든든해요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 CONTENTS

I. 개요 04

### II.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06
-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시설 07

### III.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전 확인사항

- 1. 상품 기본구조 09
- 2. 보장 담보의 특징 11
- 3. 보상하지 않는 사항 12
- 4.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처벌 13

〈부록1〉 손해보험회사 연락처 및 홈페이지 현황 14

〈부록2〉 재난배상책임보험 Q&A 15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는 2017.1.8일 이후 판매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 및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실제 개별계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개별 약관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요

##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
| 1층 자기시설  | 보상   | 미보상      |
| 제3자 인명피해 | 미보상  | 보상       |
| 제3자 재산피해 | 미보상  | 보상       |



##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좁은 반면,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보장한도가 무한대이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재난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영업장내 모든 사고      |
| 보상금액 |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등 |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 보험료  | 연간 2~3만원 내외         | 연간 30~40만원 내외   |

※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판매시설 기준이며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 잠깐! 체크해 보세요

- Q**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상이 되나요?
- A**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화재·폭발·붕괴인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운영형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3년 미만의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보험회사별 판매정책에 따라 상이 하며, 향후 3년 이상 장기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 II.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보험 가입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잠깐! 체크해 보세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운영자 등의 과실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운영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방지가 가능해 특수건물 내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타 법률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국유 재산과 공유재산 등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Ⅲ.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 1. 상품 기본구조

#### 보장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가입금액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 1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세부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      | 가입금액                                   |
|----|------|--|
|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br>*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br>*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br>*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
| 대물 |      | 1사고당 10억원                              |



## 예시 보험료

※ 시설별 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입니다. 시설별 보험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시설        | 예시시설       |            | 100㎡ 기준<br>연간 보험료(원) |
|-------------|------------|------------|----------------------|
|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
| 경마장         | 60,000     | 10,500,000 | 20,000               |
| 장외발매소       | 10,000     | 249,000    | 20,000               |
| 여객자동차터미널    | 1,000      | 340,000    | 34,000               |
| 박물관         | 5,000      | 47,000     | 20,000               |
| 미술관         | 5,000      | 47,000     | 20,000               |
| 과학관         | 7,000      | 51,000     | 20,000               |
|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               |
| 주유소         | 매출 10억원 기준 | 95,000     | -                    |
| 물류창고        | 10,000     | 2,890,000  | 28,900               |
| 경륜장         | 50,000     | 8,750,000  | 20,000               |
| 경정장         | 10,000     | 1,750,000  | 20,000               |
| 장외매장        | 5,000      | 925,000    | 20,000               |
| 장례식장        | 3,000      | 149,000    | 20,000               |
| 전시시설        | 90,000     | 3,258,000  | 20,000               |
| 지하상가        | 10,000     | 24,333,000 | 243,300              |
| 국제회의시설      | 90,000     | 3,258,000  | 20,000               |
| 1층 음식점      | 300        | 28,000     | 20,000               |
| 15층 이하 공동주택 | 100세대 단지   | 1,000(세대당) | -                    |
| 숙박시설        | 1,000      | 154,000    | 20,000               |

※ 주유소는 매출액,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세대별 기준 적용



## 2. 보장 담보의 특징

### 무과실 사고도 보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화재·폭발·붕괴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시설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드리지 않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경우도 보장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상하지 않는 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아래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화재(붕괴·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처벌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과태료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                   |
|            | 30일 초과<br>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 2017년 1월 8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

-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다만, 2017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하여야 합니다.

## 부록1 손해보험회사 연락처 및 홈페이지 현황



| 보험회사  | 대표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메리츠화재                   | 1566-7711 | www.meritzfire.com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www.hwgeneralins.com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www.lotteins.co.kr     |
|  Heungkuk Life Insurance | 1688-1688 | www.heungkukfire.co.kr |
|  삼성화재                  | 1588-5114 | www.samsungfire.com    |
|  현대해상                  | 1588-5656 | www.hi.co.kr           |
|  KB 손해보험               | 1544-0114 | www.kbinsure.co.kr     |
|  동부화재                  | 1588-0100 | www.idongbu.com        |
|  The-K 손해보험            | 1566-3000 | www.educar.co.kr       |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www.nhfire.co.kr       |

## 부록2 재난배상책임보험 Q&A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의 거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되며,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시설 관리자 등에게 민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은?



- ▶ 기존에 거의 모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담보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동시 가입 시  
《예시 : 호텔, 객실 50개, 면적 1,500m<sup>2</sup> 기준》

| 구분       | 보상한도                                | 현행     | 재난배상책임보험                    |
|----------|-------------------------------------|--------|-----------------------------|
| 영업배상책임보험 | 대인 : 인당 3천만원 (사고당 100억원)            | 약 78만원 | 약 66만원 (12만원 할인, 15% 할인 적용) |
|          | 대물 : 10억원                           |        |                             |
| 재난배상책임보험 | 대인 : 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br>대물 : 10억원 | -      | 약 16만원                      |
| 합계       |                                     | 약 78만원 | 약 82만원                      |

\* 보험료 인상분은 약 4만원에 불과한 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대폭 증가  
※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약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요율을 일할 적용하여 잔여 보험료 환급  
《예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1년 가입후(보험료 10만원), 5개월 이후 보험계약 해지시》  
→ 보험료 10만원 : 10만원 - 5만2천원(5개월 적용요율) = 4만8천원 환급



재난배상보험과 관련된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 보험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예시 참고
- ▶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장되는지?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벌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화재벌금, 기타 비용손해 등의 보장은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다른 종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재난 사고로 옆 가게의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되는지?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담보하고 있어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임차한 건물인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점유자를 가입자로 정해 놓아 임차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개별 가입해야 하는지?



- ▶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단지별로 가입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해 운영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별로 가입할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료 낭비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부속건물 등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 ▶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Q**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례식장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 장례식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비영리 시설인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도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파트, 지하상가 등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 하셔서 보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내역까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화재·폭발·붕괴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입원일당 등 정액보상형 담보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Q**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시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만기시 재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리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Q**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지?

▶ 보험가입 시설에서 원인미상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됩니다.



**Q** 지자체 소유 건물로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신배채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9층 아파트인데 이미 신배채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9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존에 가입한 신배채부 화재보험은 임의로 가입한 보험이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1층 음식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